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

✔ 학사정보시스템 개인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!
※ 휴학, 복학 등 각종 통지서와 안내가 등록된 정보를 통해 제공됩니다.

1. 기본사항

개인사정, 경제사정, 취업준비, 어학연수, 질병, 육아, 창업,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.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휴학은 재학중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예외적인 사항은 학사안내 또는 담당부서(교무처 ☎ 033-760-1136)로 확인바랍니다.

2. 휴학의 종류

종 류	구 분	사유(증빙서류)	신청 기간	신청 서식
일반휴학	일반	개인사정, 경제사정 취업준비, 어학연수 등	2026.06.23.(화) ~ 2026.10.23.(금) (2학기 수업일수 2/4선 이내)	일반휴학 신청서
	질병	질병으로 인한 휴학 (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)	상시(사유발생)	
	육아	임신 및 출산, 육아 등 (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증빙)	상시(사유발생)	
	창업	창업 또는 창업 준비 (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증빙)	2026.06.23.(화) ~ 2026.10.23.(금) (2학기 수업일수 2/4선 이내)	
입대휴학	입대	재학중 군입대 (입영(소집)통지서)	상시(사유발생) ※ 수업일수 3/4선 이후 입대자는 입대일 포함 3일 이전까지 수업 이수	입대휴학 신청서
	군휴학 연장	휴학중 군입대 (입영(소집)통지서)	상시(사유발생)	휴학연장 신청서
연장휴학	일반	휴학중 연장휴학이 필요한 경우	복학 전 2개월 이내	휴학연장 신청서
	군복무 연장	장기복무(임기제부사관 등) 전환인 경우(복무확인서)	상시(사유발생)	

※ 해당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→ 대학생활 → 서식함 → 학생 → 휴학신청서 참조

3. 등록금 처리

휴학시기	복학시 등록금 대체여부	복학시 등록금 납부여부
수업일수 2/4선(2026.10.23.)이내에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/4선(2026.11.18.)이내에 입대휴학 한 자	등록금 전액 대체	-
수업일수 2/4선(2026.10.23.)이후 일반휴학 한 자 수업일수 3/4선(2026.11.18.) 이후에 입대휴학 한 자(학점인정 가능)	등록금 대체 불가	전액 납부

※ 1.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 분납하고 있는 자는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한다.
2. 입대휴학자의 등록금에 대한 대체 여부는 입대일로 기준한다.

4. 휴학 절차

가. 직접방문신청







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 신청서 작성	▶	지도교수 면담 및 학(부)과장 확인	▶	도서대출확인 (도서관) *※ 휴학연장 제외*	▶	신청서와 관련서류 교무처 제출 (대학본부 2층)	▶	학사정보시스템 승인 여부 확인(완료)

나.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(등기우편 발송)







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 신청서 작성	▶	등기우편 발송 (교무처) *※ 학부(과) 전달*	▶	학부(과) 지도교수 상담 및 학부(과)장 확인 *※ 도서관 경유*	▶	교무처 접수 후 처리	▶	학사정보시스템 승인 여부 확인(완료)

※ 주소 : [26404]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교무처 학적담당

5. 기타 유의사항

- 수업일수 2/4선(2026.10.23.)을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소멸됨.
- 수업일수 3/4선(2026.11.18.)이후 일반휴학은 불가함.
- 수업일수 3/4선(2026.11.18.)이후 입대자는 입대일을 포함한 3일 이전까지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며,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.
- 입대 후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거나, 취소 후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.
- 수업일수 3/4선(2026.11.18.)이후 군입대로 휴학을 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인정받은 학점인정원(입대휴학 신청서에 포함)을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입대일자가 학기 종강일(2026.12.22.)이후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마쳐야 하며,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군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한다.
 단, 장기복무(임기제부사관 등) 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원과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연장하여야 한다.
-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영(소집)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.
- 신(편)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(단, 질병 및 육아, 군입대 휴학은 가능)
- 졸업유급자의 경우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1학기 휴학이 가능하다.
-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함.
- 기타 문의는 학부(과)사무실 또는 교무처 학적담당(대학본부 2층, ☎033-760-1136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2026. 5.

한라대학교 교무처장